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저출산에 따른 유아 수 감소로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기준 신설(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19.8.)에 따라 관할청이 현행 폐쇄인가 처리기한(15일) 내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쇄인가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실화하고자 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명령 권한을 유치원 설립·운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법령에 감사자료제출 거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 방안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처리 기한 연장(안 제9조 제8항)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

다.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 명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34조)

법 제8조의3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라. 감사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1의2 제2호 마목)
감사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신설

* 사립학교법 제48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마.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 나목)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완료

대통령령 제 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1호 중 “15일”을 “60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 통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 받은 폐쇄인가에 대한 통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4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유아모집 정지의 기간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개시한다.

바.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정원감축을 할 때에는 감축된 정원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감축된 정원이 1 미만의 소수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보며, 정원감축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사.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정원감축을 할 때에는 정원감축이 적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되는 경우 그 정원이 감축된 유치원의 정

원을 감축되기 전의 정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아.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한다.

자.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과 유사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그 개별기준의 처분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과 유사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경중 및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1) 유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유아모집 정지 2년
2) 1) 외에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운영을 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10퍼센트	정원감축 15퍼센트	정원감축 20퍼센트
다.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유치원비의 인상률을 초과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3퍼센트	정원감축 5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라. 「사립학교법」 제33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건축적립금을 적립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세입징수자가 아닌 자가 수입을 징수하거나 수입원이 아닌 자가 수입금을 수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10퍼센트	정원감축 15퍼센트	정원감축 20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정원감축 15퍼센트	정원감축 20퍼센트
		정원감축 3퍼센트	정원감축 5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5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정원감축 15퍼센트
마. 「사립학교법」 제48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차등적인 재정지원		
사.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3퍼센트	정원감축 5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아.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2퍼센트	정원감축 3퍼센트	정원감축 5퍼센트

자. 유치원규칙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1) 유아교육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유아모집 정지 2년
2) 1) 외에 유아교육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유아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300	400	500
나.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300	400	500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	100	200	300
라. 법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	100	200	3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 ⑦ (생략) ⑧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의 폐쇄: <u>15일</u> 2. 3. (생략)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1. ----- <u>60일</u> 2. 3. (현행과 같음)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신설> 1. 2. (생략) ② 삭제 ③ ~ ⑤ (생략)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 -----. 1. <u>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u>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유아교육정책과	
연락처	044-203-6497
	044-203-6444
	044-203-6498